

대학발전기금조성 운영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0.4.14		16		
2	2012.5.9		17		
3	2015.10.28		18		
4	2019.12.27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발전기금조성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 조달을 위한 기부금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발전기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구성원, 동문, 학부모, 기업 및 외부인 등이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한 현금, 유가증권, 도서, 부동산, 실험실습기자재 등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삭제 <2019.12.27>
3. 단위기관이라 함은 대학원(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포함), 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발전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에 적용되며, 기금부서를 통하지 않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12.27>

- ② 발전기금의 조성은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유관기관의 자비에 의한 기여금으로 하며, 각종 지원사업비 중에서 개인별 지원금의 일부를 대학발전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2 장 발전기금 모금 사업 및 운용·관리

제4조 (발전기금 모금사업) ① 발전기금 모금사업은 기획홍보팀에서 주관한다. 다만, 모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위기관에서의 모금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모금사업 추진 계획을 사전에 기획홍보팀과 협의하여 주관할 수 있다.

- ② 단위기관에서 모금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부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금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발전기금 종류)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사용목적에 명시한 기부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일반 발전기금으로 한다.
2.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특정 목적 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 (발전기금 모금사업비) ① 발전기금 모금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일반사업비, 모금활동비, 행사비 등으로 구분하고 교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② 발전기금 유치활동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는 별도 지침에 따라 공로표창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발전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부서와 단위기관에서 모금된 발전기금은 전액 회계

부서에 입금하여야 하고 기금부서는 기부자 명부, 약정부, 교비입금 출납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② 기금부서에서 모금하여 회계부서에 입금된 발전기금의 운영은 회계부서에서 총괄하며, 자금관리에 따른 증식 등의 변동 내역을 기금부서에 통보한다.
- ③ 일반발전기금의 사용은 기금부서에서 발의와 기금사용부서의 지출품의로 지출하며, 특정목적 발전기금은 특정 목적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출품의로 지출한다. 단, 기금부서의 발의가 있을 경우 기금부서를 경유하여 지출품의를 하거나 기금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출 품의를 해야 한다.
- ④ 발전기금의 사용·지출의 증빙은 교비회계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감사의 표시를 위해 별도로 정한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조 (발전기금 영수증 발급) 기금부서와 단위기관에서 주관하여 발전기금 기부금품을 기부한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영수증의 발급은 기금부서에서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의2 (심의위원회)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0.28>

제 3 장 발전기금 조성위원회<삭 제 2012.5.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대학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발전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1년 3월부터 적용 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